

# 심사보고서

【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

의안 번호	390
----------	-----

2024. 3. 21.  
도시교통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. 3. 6. / 박경원 의원 등 11명  
나. 회부일자 : 2024. 3. 6.  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4. 3. 21.

## 2. 제안설명 요지

### 가. 제안이유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통해 도시계획에 기여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주민 의견 청취 공고 매체 방법을 추가함. (안 제7조)
-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기준 명확화를 위한 조문을 정비함. (안 제59조)
-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규정을 정비함. (별표 9)
-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규정을 정비함. (별표 10)

- 성장관리계획 시행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규정을 정비함. (별표 20)

### 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조공선)

-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반상업지역, 근린상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규정을 별표에서 정비함으로써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 법률체계에 맞는 조례를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상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음.

### 4. 질의·답변 요지

- 회의록 참고

### 5. 토론요지

- 없음

### 6. 심사결과

- 「원안가결」

### 7. 소수의견 요지

- 없음